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

2023. 09. 2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이하 '본 회칙')은 성폭력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해결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동체 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모든 회원과 수료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생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과(부)·동아리·전공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을 전부 포함한다.
- ③ 사건의 가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 중 일방만이 해당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없는 한 본 회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생회칙의 해석)

- ① 본 회칙의 해석은 별첨된 해설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회칙 및 해설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 대표자·학생회·대책위원회 등 사건 해결 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성적 자기결정권

제4조(성적 자기결정권)

- 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해나갈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인간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존중받을 권리: 성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및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 2. 거부할 권리: 상호 동의가 없는 성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 및 성에 관한 대화를 거부할 권리
- 3. 사생활의 권리: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제5조(공동체 대표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 2.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
- ②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을 부담한다.
- 1. 사건 예방 및 문화 조성의 책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회원들 사이에 성폭력을 비롯하여 성차별적인 언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성평등을 실현하기위한 다양한 대내외적 활동에 힘써야 한다.
- 2. 단위별 반성폭력 회칙 작성·공표 및 적극적 제·개정의 책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성평등 문화의 조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위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반성폭력 회칙을 작성 및 공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를 제·개정하며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때, 공표하는 회칙의 형식과 그 위계는 각 단위의 상황에 따른다.
- 3. 단위별 성평등 내규 작성 및 공표의 책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새내기새로배움터, 농촌학생연대활동 등 각종 학생자치 행사 시 성평등 내규를 작성 및 공표하여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공표하는 내규의 내용 및 형식은 각 단위의 상황에 따른다.
- 4.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의 책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성 폭력 예방 교육을 책임감 있게 이수해야 한다. 또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룰미팅 이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인권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수 여부와 이수 강좌 내역 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 공고에 게시된다.
- 5.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언행의 책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언행의 책임을 진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환경 혹은 언행은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된다.
- 6. 사건 처리의 책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 공동체의 대표자는 본 회칙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회칙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성폭력

제6조(정의) ① 성폭력은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 ②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1. 성적 가혹 행위
- 2. 성적 지향의 자율성 침해
- 3. 성적 대상화
- 4. 성차별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
- 5. 기타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7조(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시각적 성폭력 등이 있다.

제8조(2차 가해, 직무 유기, 사적 폭력) 다음 각호의 행위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신고·공론화할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의 주체는 본 회칙 제4장(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의거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1. 2차 가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2. 직무 유기: 사건 당사자와 사건 담당자가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이행을 방임하는 경우
- 3. 사적 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절차 밖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이때, '폭력'은 물리적 폭행과 언어폭력, 신상 공개, 사생활 유포, 협박, 집단따돌림 등의 모든 유·무형의 폭력을 포함한다)

제4장 성폭력 사건의 해결

- 제1절 정의 -

제9조(공동체적 해결) ①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은 토의와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공동체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 성차별적 인식·문화 등 공동체의 잘못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대표자는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 ③ 사건 당사자가 속한 단위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1. 피해 당사자가 속한 단위는 해당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2. 가해 당사자가 속한 단위는 해당 당사자를 비롯한 공동체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사건 당사자)

- ① '피해 당사자'란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1. '피해 추정인'이란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거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2. 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될 경우 피해 추정인과 여타의 피해 당사자는 '피해자'로 규정된다.
- ② '가해 당사자'란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및 가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 '피신고인'이란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2. 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피신고인은 '가해자'로 규정되다.
- 3.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 이외에도 성폭력을 동조·방조하는 등 사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해 당사자들은 '가해책임자'로 규정된다.
- ③ '신고인'이란 사건을 직접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④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 1. 당사자의 인적사항
- 2. 당사자를 인지·특정할 수 있는 사항
- 3. 사건에 관한 내용 전반

- 제2절 사건의 신고 -

제11조(정의) 사건의 신고란 사건의 발생을 알리고 적절한 해결의 절차 및 공론화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제12조(신고의 요건)

- ① 피해 당사자는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지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 ②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신고인이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지했다면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방법) 사건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때, 신고기구는 신고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신고기구) 소속 단과대학·학과(부) 학생회, 동아리 등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인의 권리) 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익명으로 신고할 권리
- 2. 허락 없이 신상을 유출당하지 않을 권리

제16조(신고인의 자격) 신고는 피해자 본인 혹은 피해자가 위임한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상황을 목격한 주변인 등이 할 수 있다.

제17조(최종접수인)

- ① 신고의 최종접수인은 사건 공론화 여부와 방식, 사건 해결 방식 등을 결정한다. 단, 모든 결정 이전에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 ② 신고의 최종접수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속한 단위의 대표자(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등)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단위는 회칙이나 내규, 혹은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최종접수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접수)

- ① 공동체가 신고를 접수한다는 것은 사건을 공론장에 상정함을 의미한다.
- ② '사건의 공론장 상정'이란 공동체에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사실과 신고 내용의 개략을 알리고, 해결의 절차 및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함을 의미한다.
- ③ 사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단, 최종접수인은 사건이 접수되면 논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결 주체들과 공유해야 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건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동체는 본 회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 2.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신고의 반려)

- ① 신고 반려 여부는 사건 당사자들과의 논의 후 최종접수인이 결정한다.
- ② 최종접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접수를 거부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1. 피해 당사자의 반대
- 2. 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사건 경위를 확보하는 절차 중 양쪽의 진술이 모두 일관적이고 타당하며 일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최종접수인은 어떤 진술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결정을 공동체 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인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종접수인은 신고 접수 포기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공동체가 규정한 기간 내에 특정 진술 채택 포기의 이유를 알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신고 반려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인권센터 등에 사건을 조속히 이관하여야 한다.

- 제3절 대책위원회 -

제20조(지위) 대책위원회는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본 회칙 제9조에 따른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제21조(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대리인·참고인·증인·신뢰인의 수는 전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위원장은 최종접수인으로 정한다.
- ④ 부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정한다. 단,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최종 접수인인 경우,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최종접수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
- 2.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인권 담당 부서의 구성원
- 3. 기타 사건 해결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⑥ 위원의 임기는 대책위원회의 설치 시로부터 당해 사건 처리 종결 시까지로 한다.
- 단, 위원의 임기는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및 학생회 집행부의 임기와 별도로 한다.

제22조(기타 당사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책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과정에 동석할 수 있다. 본조에 규정된 자는 본 회칙 제21조에 규정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제착·기피·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 대리인: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권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단,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2. 참고인: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
- 3. 증인: 사건과 관련 있는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 4. 신뢰인: 피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피해 당사자를 동반하여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자

제23조(제척)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때
-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때
- 3.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때

제24조(기피)

- ①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 본 회칙 제2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 2. 불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는 기피신청서 및 사유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회피)

- ① 대책위원회 위원은 제2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접수인의 동의를 얻어 회피하여야 한다.
- ② 회피는 대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24조의 기피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절차)

- ① 사건 해결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건 경위 확보
- 2. 최종접수인의 신고 접수
- 3. 대책위원회 구성
- 4. 집단적 논의를 통한 피해 당사자와의 협의
- 5. 사건 평가
- 6. 사건의 처리 및 해결 방안 모색, 조치 도출
- ② 사건 해결 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최종접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사건을 인권센터로 이관할 수 있다.
- 1. 피해 당사자가 인권센터 이관을 희망하는 경우
- 2. 본 회칙 제19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회의)

- 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② 회의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되어야 한다.
- ③ 사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사건 평가)

- ① 사건 경위가 밝혀진 경우 공동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 1. 사건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이유
- 2. 책임 소재 및 정도
- 3. 원인
- 4. 공동체의 책임
- 5. 문제의 해결책
- ② 평가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평등

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제한될 수 있다.

③ 사건 해결의 주체는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 토론에서의 쟁점들을 공식적·공개적 기록으로 보관하여 이후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해당 기록의 보관 및 공개·인계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29조(사건의 해결)

- ① 공동체는 공동의 평가에 기반하여 실천적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
- ② 조치는 본 회칙 제26조, 제28조에 따른 공동체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하며 제9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③ 사건에 관련된 자가 본 회칙에 규정된 폭력 또는 직무 유기를 범했을 경우,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 등은 다음 각호의 조치(징계)를 한 가지 이상가할 수 있다.
- 1. 비공개 사과문
- 2. 공개 사과문
- 3. 학생자치 공간 출입 금지(단, 일정 기간을 특별히 정하여 명시할 수 있다)
- 4. 학생자치 기구의 사업 및 행사 제외
- 5. 학생 자치 활동 참여(집행부, 동아리 활동 등) 금지
- 6. 선거권 박탈
- 7. 피선거권 박탈
- 8. 학생회원 자격 박탈
- ② 최종접수인은 '공간 분리의 원칙'에 따라 피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피신고인의 공동체 행사 참여를 임시로 금지할 수 있다.
- ③ 결정된 조치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건 당사자는 조치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해결 방안 도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해결의 주체는 이를 공론장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제30조(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접수된 사건은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 1. 해결의 목적: 공동체의 정의와 상호신뢰를 회복하며, 공동체를 평등하고 해방적으로 변화시킨다.
- 2. 공적 해결: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 혹은 '성(性)의 문제'와 같이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 침해는 공적인 문제이며, 공동체가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사건에 관해 함께 반성하고 행동을 시정할 책임을 진다.
- ② 사건 처리는 민주적인 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제28조 2항에 준하는 투명성
- 2. 토론과 평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위·친분·사회적 편견·현대적인 사회 상규와 상식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의한 금기등의 비합리적 요인들이 토론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③ 조치 담당자는 '피해자 중심적 해결'에 입각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 1. 사건을 해석할 때 피해 당사자의 진술·경험·관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 2.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 ④ 사건 처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해결 주체는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31조(관계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

- ① 공동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 및 기타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② 관계 당사자들은 다음 각호의 보편적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며, 본 회칙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
- 1.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의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
- 2.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先) 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 3.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와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 4. 조력을 구할 권리: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 장애·언어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력을 구할 권리
- 5. 문제를 제기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앞선 요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

제32조(피해 당사자의 권리) 피해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치유와 회복의 권리: 공간 분리·휴직 등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적 배려를 받을 권리,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권리
- 2. 존중받을 권리: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과민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절차에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특정인과의 대면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제33조(가해 당사자의 권리) 가해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소명할 권리: 사건의 경위와 맥락에 관해 소명할 권리
- 2. 존중받을 권리: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한 제한 없이 적용되며, 본 회칙 제정 이전에 발생했으나 미해결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 요건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의 개정 절차 요건을 따른다.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 해설

1. 제1장 제2조 1, 2항

이 회칙의 목적은 중앙대학교 학생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공동체적 해결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적 상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원이 아닌 이라도 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인 경우 회칙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때, 대상은 사회과학대학의 모든 회원뿐만 아니라 수료생, 졸업생(졸업 이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학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질적 구성원이라 판단된 자를 포함한다.

2. 제1장 제2조 3항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우선의 규범이 있는 경우 해당 회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사회과학대학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의 반성폭력회칙이 총학생회 반성폭력회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학생회칙 또한 학과(부)-단과대학-총학생회 회칙이 전술한 순서대로 적용 및 해석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규범이 존재할 때는 정의, 인권, 집행의실효성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다른 규범을 바탕으로 삼되 해당 회칙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3. 제1장 제3조

회칙은 '절대적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를 명문화한 규범이며, 문구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따져서 적용하는 것보다 회칙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회칙은 '성폭력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일종의 매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서로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요소들이 결합된 총체이다. 각각의 문구는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서가 아니라, 회칙의 전체적인 논리와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은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생회칙이 기반한 논리와 그것이 담아내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글이다. 학생회칙 본문은 학생회와 회원들의 의무를 규정하며, 해설은 그것이 오독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그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해설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지만, 회칙이 어떤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인도한다. 학생회칙을 담당하는 대표자는 조항의 해설을 책임감 있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제2장 제4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성적 존엄과 자기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해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은 무한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와 존엄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성차별주의나 호모포비아처럼 다른 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성적 가치관의 표현이나 실천은 인권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적 지향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것(아웃팅)도 '사생활의 권리'를 위배 한 사례에 해당되는 바,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비하하는 것 역시 성적 자기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성에 근거해 차별하는 행위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꼭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도 성차별주의나 기타 반인권적인 통념에 근거한 언행과 문화는 성폭력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구성원들의 평등과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비판하고 시정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다.

5. 제2장 제5조

여기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란 가해자의 처벌을 통한 징계의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생 이외의 학내 공동체가 관계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에 본 학생회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근거로서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생회 등의 공동체 대표 단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이외에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 (추정인)와의 논의를 통해 공론화 및 실천적 행동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진다. 이때 별도의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론화 및 실천적 행동을 도모할수 있다. 이는 본 회칙이 적용되는 학생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제3장 제6조

제6조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개념을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 침해,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을 둔 행위를 가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는 나열된 일련의 행동들을 공동체 내에서 모두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행한 이들은 '성폭력의 가해자'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전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열된 행동들이 공동체 내 신뢰를 배반하는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사라져야 하는 문화임을 상기시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전술된 행동들이 발생한 당시의 맥락과 서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없이 단편적으로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처벌(분)하는 것은 '공동체적 해결'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에 대해 특정 추정인이 문제를 제기하였 거나, 문제 제기가 없더라도 대표자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개 선을 위한 집단적 논의 등의 특별한 노력을 실천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즉, 제6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공동체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개개인의 '예민함' 또는 '유별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는 동시에 폭력적인 문화를 철폐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과 이를 행하는 대표자들의 책임을 전제한 것이다.

7. 제3장 제7조

성폭력 유형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회칙에 특정 성폭력의 유형을 기재하는 것보다 폭넓게 유형화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 폭력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범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8. 제3장 제8조 1호

2차 가해의 사례 : 이것은 2차 가해가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며, 일련의 사례이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1. 공론화를 저지하거나 민주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 가해당사자나 그 주변인이 피해당사자나 신고인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하지 못 하도록 압박하는 것
 -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
-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책임자나 구성 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
- 신고를 받거나 하기로 피해당사자에게 약속한 사람이 최종접수인에게 신고를 전달하지 않는 것
- 최종접수인이 임의로 신고를 반려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는 것(제19조 2항의 사 유는 제외)
- 사건 해결 절차를 임의로 구상하여 집행하거나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강요 하는 것
- 당사자들과 공동체에게 합당한 사유를 밝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회칙에 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중단하는 것
 - 사건과 무관한 사유로 정당한 징계를 유보하거나 저지하는 것
 - 결정된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유보하는 것
 - 2.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 대한 공격 및 추가적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
 -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가해자를 유혹했다', '위험한

곳에 가해자와 둘이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등)

-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친하게 지냈다',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등)
- 사건과 무관한 피해당사자의 성격이나 사생활을 사건의 성격과 관련짓는 것('가 해자와 원래 악감정이 있었다', '원래 성적으로 문란했다' 등)
 - 사건의 주요 경위를 왜곡하여 퍼뜨리는 것
 -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 회칙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을 비난 또는 폭행하는 것,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 또는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진상에 대한 추 측을 퍼뜨리는 것
 - 모든 성을 포함하지 않고 성 정체성을 무시하며 혐오하는 것.

9. 제3장 제8조 2호

직무 유기의 사례 : 이것은 직무 유기가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사례이다.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사유와 양해를 밝히거나 구하지 않고 절차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
- 담당자가 교체인력을 구하지 않은 채 절차 도중에 휴직하거나 장기 출장을 가는 것
- 담당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에 반드시 나와야 할 사건의 당사자가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 사건에 관한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 조치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
- 사건 당사자가 장애, 언어 등의 문제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정한 대 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

10. 제3장 제8조 3호

명문화된 절차 또는 공동체의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계 당사자와 담당자, 공동체에 대해 압력과 폭력 등의 사적인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사적 폭력의 금지를 요망하는 본 내용은 본 회칙에 명시된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와 공동체 전반에 걸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공동체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과 관련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을 상기하는 목적의 조항이다.

11. 제4장 제2절 제17조

해당 사건의 최종접수인은 학생회 이외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임시 또는 상설 기구(대책위원회 등)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기구에 신고 접수를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론화에 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최종접수인에게 있다.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이외의 공동체, 가령 학과(부)나 동아리 내에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최종접수인의 역할은 해당 공동체의 대표자가 맡는다. 예를 들면, 동일한 학과(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공동체의 대표자가 맡으며, 범학과(부)의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사회과학대학 공동체의 대표자가 맡는다. 단, 상황에 따라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대표자가 변경될 시 공동체와 사건 당사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단위는 상황에 맞게 최종접수인의 역할을 할 직책을 따로 두거나 복수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접수인의 지정에 관해서는 각 단위가 정한 회칙에 우선한다. 최종접수인 본인이 가해지목인인경우 회칙이나 내규 등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공동체 합의를 통해 선출된 직무 대행자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 옳다. 사건 접수 이외의 다른 책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2. 제4장 제2절 제19조 2항 2호

'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한 최종 신고접수 반려는 책임자 및 책임자가 소속된 단위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즉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신고의 접수에 있어서 관련자의 주관적인 생각또는 경험, 기호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전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와 사건접수기구가 보다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건 경위 또는 관련 내용을 보다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

13. 제4장 제3절 제29조 3항

본 조항의 징계 규정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해 학생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징계 또는 처분을 가할 수 있다는 '선택의 보기'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동체의 회칙에 따라 징계를 가하는 주체는 학생회, 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으며 집단적 토론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임시 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징계를 가하는 방식과 그 주체에 대해서는 각공동체의 회칙과 상황에 따른다.

14. 제4장 제3절 제30조 2항 2호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토론'이란 사건을 단순한 '이슈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토론을 통해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일부분을 부각하여 토론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토론으로 공개되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한다.

15. 제4장 제3절 제30조 3항

피해자 중심적 해결은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해 왔다.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전부 들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공동체적 사건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는 가해자 시선 중심적인통념이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받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 드는 것, 보복이나 권력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조항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장치로, 공동체는 피해자의 맥락에 따라 사건을 재해석하기 위해노력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16. 제4장 제3절 제32조 1호

'공간 분리'는 피해당사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다. 최종접수인이 포함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의 공간 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기를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은 최종접수인이 포함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가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한다. 이때, 사건이 최종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적인 접수 반려일을 임시 조치의 한계선으로 규정한다.

17. 제4장 제3절 제32조, 제33조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의 권리는 '사건의당사자' 규정 전반과 더불어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신분의 관계인들은 최종적인 신고 접수 이전, 사건과 관련한 행위 내용을 추정받는 상태일 뿐 확정적인 피해자 또는가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는 최종접수인의 신고 접수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제32조와 제33조는 사건과 긴밀히 연계된 당사자 신분의 관계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그들에 대한 불이익 또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기되었다.이때, 당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서술이 가해당사자에 의해 책임을 회피할목적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